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19. 1. 1.字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함
- 나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”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
- 다.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“재정관리담당관”에서 “재정균형 발전담당관”으로 변경(안 제10조제5항)
- 나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변경(안 제14조제1호)
- 다.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(안 제2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, 제32조의3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재정관리담당관”을 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본문 중 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)를”을 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이하 “체크카드”라 한다)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카드사용”을 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원회 설치)</p> <p>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재정관리 담당관</u>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 설치)</p> <p>⑤ ----- ----- <u>재정균형발전 담당관</u>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지방보조금의 집행)</p> <p>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<u>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)</u>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</u>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.</p>	<p>제26조(지방보조금의 집행)</p> <p>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<u>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이하 “체크카드”라 한다)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사용하여</u> 집행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</u>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반영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“심신장애”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,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 미 희 (02-2133-6855)